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0-127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년 11월 일

제출자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0. 7. 1.자 부서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되어 개편된 조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6조)

- 신청사건립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존속기한 변경(2021.6.30. → 2026.6.30.)

나. 조직개편에 따라 부위원장 등 변경(안 제7조제2항, 제3항, 제11조제2항)

- 부위원장을 기금담당국장 →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
- 당연직 위원 중 기금담당과장 →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
-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 →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

다. 「지방회계법」을 준용하여 경리관의 명칭 변경(안 제11조제3항)

- 경리관 → 재무관으로 명칭변경

라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
(안 제1조, 제6조, 제11조제4항, 제12조, 제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,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3조의2(한시기구)
- 「지방회계법」 제29조(지출원인행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20.7.22.~8.11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 사전심사 결과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5)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2021년 6월 30일”을 “2026년 6월 3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경과된”을 “지난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부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된다.”를 “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기금담당과장”을 “신청사건립추진단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담당국장”을 “신청사건립추진단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춰 놓고”로, “증빙서류”를 “증명서류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아니한 기금의 수입·지출·운용”을 “얹은 기금의 수입, 지출, 운용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1년 6월 30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<u>경과된</u>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<u>부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된다.</u> ③ 위원은 구본청 각 국장 및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6년 6월 30일</u>----- ----- . ----- <u>지</u> <u>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.</u> ③ -----</p>

기금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단,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.

1. 2. (생략)

④ (생략)

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)

① (생략)

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
③ 「지방회계법」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

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장은 전산으로 같음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·지출·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「서울특

신청사건립추진단장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신청사건립추진단장-----
-----.

③----- 재무관-----

④ -----

----- 갖춰 놓고 -----
--- 증빙서류-----
-----.

제12조(준용) -----
않은 기금의 수입, 지출, 운용 -

<p>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</p>	<p>제13조(시행규칙) ----- 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: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

(담당: 행정8급 최동혁 / ☎ 2600-6729)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2020. 7. 1.자 부서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되어 개편된 조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(안 제6조)
- 조직개편에 따라 부위원장 등 변경(안 제7조제2항,제3항, 제11조제2항)
 - 부위원장을 기금담당국장→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
 - 당연직 위원 중 기금담당과장→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
 -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→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평가번호	2020 - 26				
자치법규명	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 급	행정7급	성 명	김태환
입안주무부서	신청사건립추진단	통보(조치)일		2020. 8. 10.	
관련조문		검토결과		조치사항	
개정안 전부		원안 동의		-	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20A서울강서027		
정책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 강서구	
	부서명	신청사건립추진단	
	담당자명	최동혁	전화번호 02-2600-6729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0년 7월 21일		
성별영향평가 내용 (신청사건립추진단)	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안은, 2020년 7월 1일자 부서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되어 개편된 조직에 맞게 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<p>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.</p> <p>다만 추가의견으로서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. 따라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여 성별균형참여를 도모할 것을 제안함</p>	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해당 없음		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0년 08월 04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최은영/02-2600-6762)</p> <p>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귀하</p>			

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

1 근 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2 개 요

- 심의일자 : 2020. 8. 10.(월)
- 심의방법 : 서면심의
- 심의위원 : 위원 14명 중 11명
 - 위 원 장 : 정헌재
 - 부위원장 : 정한조
 - 위 원 : 김진선, 정영숙, 국승열, 이덕수, 황동현, 이충숙, 문병하, 이채경, 홍흥근

안 건

- 기금 조례 존속기한 연장심의

기 금	존속기한	연장기한
공용의 청사건립기금	2021. 6. 30.	2026. 6. 30.

3 심 의 결 과

-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- 붙임 1. 심의의결서 1부.
2. 심의자료 1부. 끝.

관 계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】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】

제3조의2(한시기구)

신청사 건립을 위해 한시기구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.

【지방회계법】

제29조(지출원인행위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(이하 “지출원인행위”라 한다)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,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(이하 “재무관”이라 한다)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,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【기타】

법제처 제공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 (2019)